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

- 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 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 (영업행위)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낚시인이 낚시터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여 주는 행위도 낚시어선업으로 본다.
- 제4조 (영업시간)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- **제5조 (영업구역)** 낚시어선업자는 「별표1」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 역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 (안전운항 및 질서유지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 지 및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③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

- 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음주 및 정신질환자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『어선법』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(V-PASS, AIS 등)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,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된다.
- 제7조 (생활폐기물 수거) 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중 발생한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(이하 "생활폐기물"이라 한다)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 되며,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 (확인 및 검사) ① 관계 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수 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.
- 제9조 (협조)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 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다.
- 제10조 (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)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면서,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법 제36조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

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홍보사업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의식 고취,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

번	제 한 구 역	위 치	경 위 도	연 번	제 한 구 역	위 치	경 위 도
1	등대 (오동도 해상)	수정동	34 - 44 - 597 N 127 - 46 - 659 E	9	목섬 작은똥여 (주변일대포함)	화정면 낭도리	34 - 35 - 364 N 127 - 32 - 245 E
2	우암등대	돌산읍 우두리	34 - 43 - 026 N 127 - 47 - 865 E	10	개도 큰산 밑 직벽	화정면 개도리	34 - 33 - 243 N 127 - 39 - 676 E
3	여 초 (소죽도 서쪽)	돌산읍 평사리	34 - 41 - 223 N 127 - 41 - 925 E	11	문서 앞 작은간출여	삼산면 동도리	34 - 08 - 414 N 127 - 33 - 662 E
4	대부도 앞작은여	남 면 안도리	34 - 28 - 488 N 127 - 47 - 500 E	12	북쪽등대 반여암	삼산면 동도리	34 - 04 - 342 N 127 - 16 - 874 E
5	남고지 앞 넓여	남 면 안도리	34 - 28 - 582 N 127 - 48 - 531 E	13	역만도 힌여 앞 형제여	삼산면 초도리	34 - 10 - 842 N 127 - 21 - 127 E
6	만작굴(작은굴)	남 면 연도리	34 - 24 - 640 N 127 - 48 - 060 E	14	벼락바위 옆	삼산면 서도리	34 - 01 - 916 N 127 - 17 - 323 E
7	삼초등대 갯바위	화정면 조발리	34 - 38 - 619 N 127 - 33 - 765 E	15	거북섬 건너편	삼산면 서도리	34 - 00 - 700 N 127 - 18 - 667 E
8	칠 여	화정면 하화도 앞	34 - 35 - 641 N 127 - 36 - 564 E				